

# 수 정 안

의안 번호	2619
----------	------

2015. 11. 26.  
행정재무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일자리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7조제2호에 “(여성, 장애인,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우선)”을 추가.
-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추가.
- 안 제12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추가.

## 3. 참고사항

수정안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

# 수 정 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.

**안 제7조제2호 중** “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”을 “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(여성, 장애인,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우선)”을 추가한다.

**안 제9조제2항제3호 중** 위원회 구성 시 “(단, 어르신, 청년, 여성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)”을 “(단, 어르신,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)”으로 수정한다.

**안 제12조제1항 중** 실무위원회 구성 시 “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, 청년, 여성 등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”를 “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,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”로 수정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7조(보조금 지원 사업) (생략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</li> <li>3. (생략)</li> <li>4. (생략)</li> <li>5. (생략)</li> </ol>	<p><b>제7조(보조금 지원 사업) (생략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----- ----- (여성, 장애인,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우선)</li> <li>3. (생략)</li> <li>4. (생략)</li> <li>5. (생략)</li> </ol>
<p><b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(생략)</li> <li>3.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명 이내 (단, 어르신, 청년, 여성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)</li> </ol>	<p><b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(생략)</li> <li>3. ----- ----- (단, 어르신,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)</li> </ol>
<p><b>제12조(실무위원회) ①</b>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, 청년, 여성 등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	<p><b>제12조(실무위원회) ①</b> ----- ----- 여성, 장애인 등 -----</p>